

## 의료보험 심사사례 및 유권해석(II)

## - 재활 및 물리치료료 -

항 목	심 사 사 례 및 유 권 해 석	관 련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UVA 및 Go-eckerman피부광화학요법 Photochemotherapy unit. 사- 8</li> <li>◦ 간헐적 양압 흡입법(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Breathing) 사- 10</li> <li>◦ 마사지 (Massage) 사- 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포진에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li> <li>• 전신탈모증에 사8다는 최신 요법이므로 인정한다.</li> <li>• IPPB시 솔루메드를 사용은 중환자의 경우 인정 가능하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고가 스테로이드를 IPPB시 장기간 계속함은 바람직하지 않다.</li> <li>• I.M.V(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은 사10으로 산정</li> <li>• 부중제거, 혈액순환, spasm, 동통제거 등에 이용된다.</li> <li>• 마사지 요법이란 열치료, 견인요법, 운동요법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하는 물리치료인바 동일상병 동일 부위에 대하여 사15 신체장애 운동요법과 사11 마사지를 시술할 경우 인정할 수 있음.</li> <li>• 뇌출혈 환자, 급성 요부 염좌와 급성 디스크에 인정하지 아니한다.</li> <li>• 순환장애, fibrotic tissue에 주로 행한다.</li> <li>• 사15 운동요법과 동시 실시시 각각 인정한다.</li> <li>• 사6 초음파 치료과 동시 실시시 각각 인정한다.</li> <li>• 손가락 골절에 마사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li> <li>• Cord injury시 massage는 불인정 하다.</li> <li>• Bobath massage는 중추신경 마비환자에게 실시하는 물리치료임.</li> </ul>	<p>피부과 분과위원회 (83.8.16)</p> <p>피부과 분과위원회 (85.9.28)</p> <p>신경외과 분과위원회 (84.8.21)</p> <p>보사부 급여 1492-47030호(79.7.20)</p> <p>보사부 급여 1492-10672호(82.7.8)</p> <p>정형외과 분과위원회 (82.7.8)</p> <p>재활의학 분과위원회 (85.6.7)</p> <p>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 (84.5.18)</p> <p>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 (85.11.14)</p> <p>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 (83.3.3)</p> <p>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 (83.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욕 : 사- 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파라핀욕; 보통 손에 이용되며, 이를 행한 후에는 운동요법을 행하게 된다.</li> <li>2) ㄱ. Whirl Pool bath은 일종의 열기 요법으로써 통증으로 인하여 운동요법 실시가 곤란할 때, 여러 가지의 관절을 동시에 hot pack을 못할 경우에 시행되나, 요부염좌, 척추이분증, 테니스 엘보, 주관절 운동장애 등이나 급성 화농성 염증에는 적응증이 되지 아니한다.</li> <li>ㄴ. 사지 말단부나 류마치스 관절염에 약욕의 산정은 사12나-(2) Whirl Pool bath의 소정금액에 적용한다.</li> </ul>	

(다음호에 계속)